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2025.11.24.(월) 공고한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일부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1. 본 입주자 모집공고 51P '(3)추가 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내 '■ 납부 일정(금액)' 표의 '중도금 납부일정' 오기 수정

- 변경 전) 중도금 납부일정 : 2025-06-12
- 변경 후) 중도금 납부일정 : 2026-05-12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70-133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24.(월)	2025.12.04.(목)	2025.12.05.(금)	2025.12.08.(월)	2025.12.12.(금)	2025.12.14.(일)~ 2025.12.21.(일) [8일간]	2025.12.23.(화)~ 2025.12.26.(금) [4일간]



1 공통 유의사항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모집한 후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본청약 단지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4.(월)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85입니다.
- 본 주택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은 2022.02.28.(월)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520003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향후 부적격 처리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의 확인방법 : 청약홈>민간사전청약>당첨조회(당첨자 발표일부터 10일간)
 - * APT 조회기간(10일)이 경과 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동·호수 결정 이후 자격검증(주택소유, 전입 제한기간 충족 등)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이 취소 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사전당첨자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 기준에 따릅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5.12.12.)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청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건축공정상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책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시 청약 당첨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선택한 품목에 따른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d3-hoba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4.(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2.04.(목)	2025.12.05.(금)	2025.12.08.(월)	2025.12.12.(금)	2025.12.14.(일)~ 2025.12.21.(일) [8일간]	2025.12.23.(화)~ 2025.12.26.(금) [4일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1670-133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함.(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 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17622호(2025.11.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3-2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905세대 중 사전청약 413세대, 본청약 492세대
[특별공급 228세대(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76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6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사전 당첨자 배정 세대수	본청약 배정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 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85	01	084.9995A	84A	84.9995	26.5164	111.5159	55.2652	166.7811	49.4647	105	41	64	6	6	14	1	12	39	25	4
	02	084.9717B	84B	84.9717	26.1279	111.0996	55.2471	166.3467	49.4485	293	134	159	15	15	36	4	30	100	59	11
	03	084.9411C	84C	84.9411	26.1393	111.0804	55.2272	166.3076	49.4307	116	54	62	6	6	14	1	11	38	24	4
	04	084.9328D	84D	84.9328	26.6897	111.6225	55.2218	166.8443	49.4259	106	53	53	5	5	12	1	10	33	20	4
	05	097.9110	97	97.9110	27.0566	124.9676	63.6601	188.6277	56.9784	142	63	79	-	7	-	2	-	9	70	5
	06	097.9110P	97P	97.9110	27.0566	124.9676	63.6601	188.6277	56.9784	143	68	75	-	7	-	2	-	9	66	5
	합 계									905	413	492	32	46	76	11	63	228	264	33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공용면적과 계단 공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방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지하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

에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등기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905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사전청약 주택형(신청기준)	084.9955A	084.9697B	084.9692C	084.9328D	097.9655	097.9655P
본청약 주택형(실제 전용면적)	084.9995A	084.9717B	084.9411C	084.9328D	097.9110	097.9110P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7	97P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위 '주택형 표시 안내'의 신청기준 주택형(084.9955A, 084.9697B, 084.9692C, 084.9328D, 097.9655, 097.9655P)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약식표기된 개별 타입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7	97P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2	1	1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1	-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2	1	1	-	-	5
	북한이탈주민	-	1	-	-	-	-	1
	우수선수	-	1	-	-	-	-	1
	철거주택 (제36조제1호, 통장미사용)	-	1	-	-	-	-	1
	장애인	인천광역시	1	2	1	1	-	5
		서울특별시	1	1	1	1	-	4
		경기도	-	1	-	1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8	3	3	4	4	25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3	7	3	2	3	3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36	14	12	-	-	7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4	1	1	2	2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30	11	10	-	-	63
합 계		39	100	38	33	9	9	22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종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 체결시	1회(20%)	2회(20%)	3회(20%)	
											2026-04-13	2026-06-12	2026-08-13	
84A	105	2101, 2107동 3호 2108동 3,4호	1층	2	237,452,819	264,847,181	-	502,300,000	50,230,000	100,460,000	100,460,000	100,460,000	150,690,000	
			2층	4	237,452,819	276,047,181	-	513,500,000	51,35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154,050,000	
			3층	4	237,452,819	287,147,181	-	524,600,000	52,460,000	104,920,000	104,920,000	104,920,000	157,380,000	
			4층	4	237,452,819	298,347,181	-	535,800,000	53,580,000	107,160,000	107,160,000	107,160,000	160,740,000	
			5~14층	40	237,452,819	309,447,181	-	546,900,000	54,690,000	109,380,000	109,380,000	109,380,000	164,070,000	
			15층 이상	51	237,452,819	320,647,181	-	558,100,000	55,810,000	111,620,000	111,620,000	111,620,000	167,430,000	
84B	293	2101, 2107동 1,4호 2102, 2103, 2104, 2105, 2106동 1호 2108동 1,5호	1층	3	237,375,052	271,924,948	-	509,300,000	50,930,000	101,860,000	101,860,000	101,860,000	152,790,000	
			2층	5	237,375,052	283,224,948	-	520,600,000	52,06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56,180,000	
			3층	11	237,375,052	294,624,948	-	532,000,000	53,2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59,600,000	
			4층	11	237,375,052	305,924,948	-	543,300,000	54,33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62,990,000	
			5~14층	110	237,375,052	317,224,948	-	554,600,000	55,460,000	110,920,000	110,920,000	110,920,000	166,380,000	
			15층 이상	153	237,375,052	328,524,948	-	565,900,000	56,590,000	113,180,000	113,180,000	113,180,000	169,770,000	
84C	116	2103, 2104, 2105, 2106동 2호	1층	4	237,289,604	268,410,396	-	505,700,000	50,570,000	101,140,000	101,140,000	101,140,000	151,710,000	
			2층	4	237,289,604	279,610,396	-	516,900,000	51,690,000	103,380,000	103,380,000	103,380,000	155,070,000	
			3층	4	237,289,604	290,910,396	-	528,200,000	52,820,000	105,640,000	105,640,000	105,640,000	158,460,000	
			4층	4	237,289,604	302,110,396	-	539,400,000	53,940,000	107,880,000	107,880,000	107,880,000	161,820,000	
			5~14층	40	237,289,604	313,410,396	-	550,700,000	55,070,000	110,140,000	110,140,000	110,140,000	165,210,000	
			15층 이상	60	237,289,604	324,610,396	-	561,900,000	56,190,000	112,380,000	112,380,000	112,380,000	168,570,000	
84D	106	2101, 2102, 2107, 2108동 2호	1층	3	237,266,562	251,333,438	-	488,600,000	48,860,000	97,720,000	97,720,000	97,720,000	146,580,000	
			2층	4	237,266,562	262,233,438	-	499,500,000	49,95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149,850,000	
			3층	4	237,266,562	273,033,438	-	510,300,000	51,030,000	102,060,000	102,060,000	102,060,000	153,090,000	
			4층	4	237,266,562	283,933,438	-	521,200,000	52,120,000	104,240,000	104,240,000	104,240,000	156,360,000	
			5~14층	40	237,266,562	294,833,438	-	532,100,000	53,21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159,630,000	
			15층 이상	51	237,266,562	305,633,438	-	542,900,000	54,290,000	108,580,000	108,580,000	108,580,000	162,870,000	
97	142	2102, 2103, 2104, 2105, 2106동 3호	1층	4	273,521,960	255,980,036	25,598,004	555,100,000	55,510,000	111,020,000	111,020,000	111,020,000	166,530,000	
			2층	4	273,521,960	267,161,855	26,716,185	567,400,000	56,74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70,220,000	
			3층	5	273,521,960	278,434,582	27,843,458	579,800,000	57,98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73,940,000	
			4층	5	273,521,960	289,616,400	28,961,640	592,100,000	59,210,000	118,420,000	118,420,000	118,420,000	177,630,000	
			5~14층	50	273,521,960	300,798,218	30,079,822	604,400,000	60,440,000	120,880,000	120,880,000	120,880,000	181,320,000	
			15층 이상	74	273,521,960	312,070,945	31,207,095	616,800,000	61,680,000	123,360,000	123,360,000	123,360,000	185,040,000	
97P	143	2102, 2103, 2104, 2105, 2106동 4호	1층	4	273,521,960	277,252,764	27,725,276	578,500,000	57,85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73,550,000	
			2층	5	273,521,960	288,980,036	28,898,004	591,400,000	59,140,000	118,280,000	118,280,000	118,280,000	177,420,000	
			3층	5	273,521,960	300,616,400	30,061,640	604,200,000	60,420,000	120,840,000	120,840,000	120,840,000	181,260,000	
			4층	5	273,521,960	312,343,673	31,234,367	617,100,000	61,710,000	123,420,000	123,420,000	123,420,000	185,130,000	
			5~14층	50	273,521,960	323,980,036	32,398,004	629,900,000	62,990,000	125,980,000	125,980,000	125,980,000	188,970,000	
			15층 이상	74	273,521,960	335,707,309	33,570,731	642,800,000	64,280,000	128,560,000	128,560,000	128,560,000	192,840,000	

■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준(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이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내 사업주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이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현장 공정상 2025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8.05%) 진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청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건축공정상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책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시 청약 당첨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선택한 품목에 따른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지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본 아파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외관 색채, 부대 시설 등의 기타 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있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3">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3">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 colspan="2">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 colspan="2" rowspan="6">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원자지원부 ■ 철거주택(청약통장 불필요)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검단보상판매부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p>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p>■ 자녀기준</p>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24.(월)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11">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6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60㎡ 초과 주택형만 공급되므로, 단독세대 신청자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24.(월)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 11,528,499원	11,151,515원 ~ 13,724,941원	11,740,363원 ~ 14,449,677원	12,653,013원 ~ 15,572,938원	13,565,662원 ~ 16,696,198원	14,478,312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h><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주택</th><th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head> <tbody>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h><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h><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타입)</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 (97, 97P)</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able>	구분(타입)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97, 97P)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구분(타입)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97, 97P)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able>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th style="text-align: center;">비율</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p>■ 주택소유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주택 또는 주택 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p>■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p>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p> <p>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p> <p>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p>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조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거전용면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53조제9호가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6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6천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제53조제9호나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억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형 생활주택</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12.04.(목)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호반써밋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 1670-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12.12.(금)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 공급	1순위	2025.12.05.(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12.08.(월) 09:00~17:30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12.(금) ~ 2025.12.21.(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12.1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 기간	신청장소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2025.12.14.(일) ~ 2025.12.21.(일) [8일간] 10:00~16:00까지	호반써밋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p>※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p>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기록 대조일 : 출생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상세 발급)
	<input type="radio"/>	해외 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또는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또는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p>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input type="radi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p>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청약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 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 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 불가) -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국가유공자는 보훈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증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증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input type="radio"/>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원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별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청약자(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분),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접수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에 필요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증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함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의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해촉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흠택스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흠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5.12.23.(화) ~ 2025.12.26.(금) [4일간] (10:00 ~ 16:00)	호반써밋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분양 대금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5-910027-485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상기 계좌는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는 분양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 개인별 분양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계약금은 견본주택에서 현금이나 수표 수납 불가함으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요망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
	<input type="radio"/>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input type="radio"/>	전자 정부수입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취급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및 출력 수입인지 구매금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반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 ※ 사업주체 부담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별도로 발행하여 계약서에 첨부 예정
	<input type="radio"/>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위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건축물은 티에스리빙(주)와 (주)하나자산신탁에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분양수입금은 (주)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합니다.
- (주)하나자산신탁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사로서 티에스리빙(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만 제한적으로 수행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티에스리빙(주)에게 있습니다.
- 티에스리빙(주)가 부도, 금융거래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티에스리빙(주)가 보유한 본 사업 시행자 및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양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주)하나자산신탁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은 티에스리빙(주)에게 있습니다.
- 본 건축물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은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주)하나자산신탁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분양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에서 수분양자가 실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액을 결정하기로 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현장 공정상 2025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8.05%) 진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청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건축공정상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책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및 청약자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비규제지역(인천광역시)인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균등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될 때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계약자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 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3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고려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대금 납부가 지체되더라도, 납부기일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2곳 이상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우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계

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등에 의거하여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 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지면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 암반 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키즈카페), 관리사무소, 경비실, MDF실, 방재실,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용역원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청약 또는 계약에 관한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 사항

- 본 아파트의 학교 설립 및 지정 주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학교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분양률 입주상황,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내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시기 및 개교여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교육청과 협의(임시 배치학교의 통학대책 및 교육시설 확충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이고, 임시학교 배치 시 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 사항 안내

-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인천아람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임.
-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임.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필수 선택 항목으로 확장 여부 선택 불가)

(단위: 원, VAT포함)

구분(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6-05-13	입주지정일
84A	4,490,000	449,000	898,000	3,143,000
84B	5,320,000	532,000	1,064,000	3,724,000
84C	3,970,000	397,000	794,000	2,779,000
84D	4,680,000	468,000	936,000	3,276,000
97	3,570,000	357,000	714,000	2,499,000
97P	4,560,000	456,000	912,000	3,192,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5-910027-485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최초 발코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현장 공정상 2025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8.05%) 진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아파트 건축공정상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 이 불가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책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는 일괄확장(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제외)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별도의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감독에 따라 시공 후 변경승인을 받은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탑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제습기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의 종류: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구 분(타입)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 고
				일반형	고급형	
84A	1안	2	거실+침실1	4,240,000	4,840,000	-
	2-1안	3	거실+주방+침실1	5,220,000	6,050,000	-
	2-2안	3	거실+침실1+침실2	5,300,000	6,140,000	-
	2-3안	3	거실+침실1+침실3	5,500,000	6,330,000	-
	3-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290,000	7,360,000	-
	3-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480,000	7,550,000	-
	3-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80,000	7,360,000	-
	4-1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70,000	8,880,000	-
	4-2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070,000	9,390,000	-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70,000	10,430,000	-
84B	1안	2	거실+침실1	4,250,000	4,840,000	-
	2-1안	3	거실+주방+침실1	5,220,000	6,050,000	-
	2-2안	3	거실+침실1+침실2	5,310,000	6,140,000	-
	2-3안	3	거실+침실1+침실3	5,500,000	6,340,000	-
	3-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290,000	7,370,000	-
	3-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480,000	7,560,000	-
	3-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80,000	7,360,000	-
	4-1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70,000	8,890,000	-
	4-2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080,000	9,400,000	-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90,000	10,440,000	-
84C	1안	2	거실+침실1	4,220,000	4,820,000	-
	2-1안	3	거실+주방+침실1	5,200,000	6,040,000	-
	2-2안	3	거실+침실1+침실2	5,290,000	6,130,000	-
	2-3안	3	거실+침실1+침실3	5,480,000	6,320,000	-
	3-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270,000	7,350,000	-
	3-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460,000	7,540,000	-
	3-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60,000	7,34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50,000	8,870,000	-
84D	1안	2	거실+침실1	4,440,000	5,040,000	-
	2-1안	3	거실+주방+침실1	5,390,000	6,220,000	-
	2-2안	3	거실+침실1+침실2	5,500,000	6,330,000	-
	2-3안	3	거실+침실1+침실3	5,700,000	6,540,000	-
	3-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450,000	7,530,000	-
	3-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640,000	7,720,000	-
	3-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00,000	7,57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750,000	9,070,000	-

97	1안	3	거실+주방+침실1	5,520,000	6,360,000	-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00,000	7,580,000	-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710,000	7,790,000	-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810,000	9,130,000	-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920,000	10,480,000	-
97P	1안	3	거실+주방+침실1	5,690,000	6,520,000	-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730,000	7,800,000	-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930,000	8,010,000	-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730,000	9,050,000	-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9,050,000	10,610,000	-

※ 본 단지의 시스템에어컨은 옵션당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추가 선택품목 – 마감재 및 가구

■ 현관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현관 중문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 84C, 84D, 97, 97P	1,500,000	-
		여닫이 도어	84B	1,600,000	-

- 현관 중문은 본공사 시 재자 특성에 따라 색상 및 패턴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 디테일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마감재 특화	일반 강마루 + 일반 벽지	광폭 강마루 + 거실, 주방, 복도 프리미엄 벽지	84A, 84B, 84C, 84D	2,200,000	-
			97, 97P	2,500,000	-

■ 주방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주방 마감 특화	상부장 가구 도어	상부장 유리 도어	97, 97P	480,000	-
주방 장식장	미제공	장식장 (상, 하부형) - 조명형 유리도어 상부장 + 가구도어 하부장 + 상판, 벽 엔지니어드 + 키큰장(내부서랍)	84A	3,950,000	-
		84B	4,350,000	-	
		84C	3,340,000	-	
		장식장 (키큰장형) - 키큰장(내부 서랍) + 엔지니어드 상판 + 조명형 유리 장식장	97, 97P	3,000,000	-
주방 팬트리	미제공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 선반	84C 84D	2,400,000 2,700,000	-
냉장고, 김치냉장고장	일반 냉장/김치 냉장고장	옵션형 냉장/김치 냉장고장+키큰장	전타입	650,000	-
주방 수전	기본형 국산 수전	국산 살균수전 (세비양)	전타입	680,000	-

• 슬라이딩 도어는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도어 선택에 따라 측면 가구마감 색상도 변경 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및 수납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침실3 불박이장	미제공	불박이장	전타입	1,300,000	-
다목적실 팬트리	미제공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97, 97P	850,000	-
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	미제공	3연동 슬라이딩 도어	97P	2,000,000	-

■ 조명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거실	기본 직부등	우물천장 4면 라인조명	84A, 84B, 84C, 84D	2,900,000	-
			97, 97P	3,100,000	-
주방	기본 펜던트	원형 펜던트	84A, 84B, 84C, 84D	250,000	-
		고급 펜던트	97, 97P	600,000	-

•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조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공용욕실	투피스형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400,000	-
부부욕실	원피스형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340,000	-
	기본 환풍기	복합 환풍기	전타입	650,000	-

•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양변기 및 환풍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 특화

(단위 : 원/VAT 포함)

구 분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전기 쿡탑	4구 가스쿡탑	3구 인덕션 (LG / BEI3ASB4BIE (블랙))	전타입	1,150,000	-
		3구 인덕션 (LG / BEI3ANHLBIE (화이트))		1,200,000	-
전기 오븐	기본 수납장	일반형 (LG / MZ385EBTA)	전타입	450,000	-
		고급형 (LG / MZ941CLCAT)		800,000	-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전면패널 노출형 (LG / DUE5NSE)	전타입	1,100,000	-
		가구패널 부착형 (LG / DIE5PT)		-	-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4구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금액) 및 납부 계좌

■ 납부 일정(금액)

구분	계약금	증도금	잔금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 및 금액	10%	20%	70%

※ 최초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5-910027-485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공사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금을 제외한 증도금과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증도금부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증도금과 잔금에 대한 납부 기일 및 납부 금액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증도금과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 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당 실내기/실외기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매립 냉매배관은 각 주택형별 공통으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단 액자형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설치 불가함)에만 각 설치 시공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매립 냉매배관에 대한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은 설계상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관하여 계약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해당 실의 매립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매립 냉매배관의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냉매배관 등 기본 설치품목을 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되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택형에 따라 실외기실, 밸코니 등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되며, 배관이 노출되는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서 난방 기능은 없으며, 가동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부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는 멀티형(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지만,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누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료,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누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쿡탑"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 배관(노즐)은 제거되지 않으며, 배관 말단 및 주방 하부장 타공 부위는 캡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스쿡탑 설치 및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공사분임.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 선택품목(안전 방범 방충망 등)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점검구, 위치, 형태, 개소 등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공통)

- 본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현장 공정상 2025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8.05%)** 진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사업주체가 제사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본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개발계획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사용승인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임.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개발계획 및 단지 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과 기반시설(도로, 방음벽, 상·하수도, 완충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학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북동측에 고가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시공 시 계획고, 방음벽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되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단지 주변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또한 추후 시공 시 계획고 등이 변경 되어 단지내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이 설치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 및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 경계선형, 레벨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승인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승인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함. • 본 단지와 인접한 계양천 / 완충녹지 / 고가도로 / 보행자 연결통로 / 보행자 출입구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산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벽체두께,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천장고는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확장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단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건축공정상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이미 진행되었음. 따라서 본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책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

- 약이 가능함.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세면대 선반하부 및 97TYPE 카운터세면대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불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 재질, 색상,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은 시공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화장실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청소용 스프레이건,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는 소방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 덕트 마감커버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84D TYPE 주방발코니에는 주방 배기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장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 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세대 대피공간 내 3~10층은 완강기가 설치됨
 - 세대 내 무선 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는 1층, 2층, 3층(8동 3, 4, 5호),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육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현장 조건이나 설계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자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덱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기쿡탑 옵션 금액은 가스쿡탑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및 세대 환기 디퓨저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2101동(3호라인), 2102동(3호라인), 2107동(3호라인)의 드레스룸 및 침실-1 과 2108동(3호라인) 의 다목적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일부 인접해 있어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 인근 및 주출입구 근처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쓰레기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2103동, 2106동, 2107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구조물 및 경관조명에 따른 조망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고, 강풍에 의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니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103동, 2104동, 2105동, 2106동은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될 수 있고, 2101동, 2102동, 2107동, 2108동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 조명 시공 특성상 천정과 약간에 들뜸이 발생될 수 있음. • 현관디딤판, 주방상판, 인조대리석은 제작 특성상 패턴이 변경 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침실3에 집광채광루버(블라인드형)가 설치됩니다.
학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학교 설립 및 지정 주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학교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분양률 입주상황,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

	<p>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검단신도시 내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시기 및 개교여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교육청과 협의(임시 배치학교의 통학대책 및 교육시설 확충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이고, 임시학교 배치 시 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p>• 학생배치 사항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인천아람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임.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임. <p>※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p> <p>※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은 84B, 97P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세대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디퓨저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스피커 등)은 견본주택용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 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각 1/2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승인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훤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옥상출입구, 계단실 1층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 통행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 2101동, 2108동 사이에 설치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 - 부출입구 : 2101동, 2102동 사이 설치 및 2102동 연결됨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어 단지 주출입구를 겸용하여 이용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2101동 4호라인 전면부 지상 1층에 주차구획 5대 설치됨(조업주차 제외).
 - 지하주차장내 지하1층(2101동, 2103동, 2104동, 2105동 인근)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보행자 연결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련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2101~2108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 입주시의 명칭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커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한 지상 ~ 지하2층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엘리베이터 총 1대, 계단실 1개소)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옥외계단과 인접한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2102동 지하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류조 / 2103동 지하에 기계실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헬름 및 동통신실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우수저류조는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홍수저감을 위하여 활용 및 관리 되어야 하며 입주자 협의체에서는 주기적인 관리 및 필요 시 행정기관 관리상태 점검 등의 경우 협조해야 함.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외벽, 옥상, 옥상 구조물, 옥탑 등의 구조물의 디자인, 형태, 줄눈,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커뮤니티 시설 및 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램프등의 설치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1~2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 1층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내 2101동과 2108동 사이(지하주차장 램프 진입), 2102동 연결(지하주차장 램프 진입) 각 1개소씩 총 2개소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주출입구를 통하여 2101동 4호라인 전측면부 지상 1층에 위치, 공동주택 출입구를 공유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 2.3m 계획되어 있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 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LG U+와 제휴하여 충전 환경을 구축, 운영(5년 약정, 5년 무상 A/S)하며,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용역원 휴게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실등),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훈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지상에서 2101, 2104, 2105, 2108동 사이 커뮤니티 계단홀(계단, 엘리베이터)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 시공 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승인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맘스테이션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관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실 시공시 위치나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주,부출입구 인근 1개동(지상1층 계획)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시설물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통행 시 미관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지붕 및 시설물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변경승인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I _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76	S4	1.2	D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204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등은 기간 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101동 옥탑지붕에 TV 공청 안테나(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2101동, 2103동, 2105동, 2107동 지붕층) 및 중계설비(지하주차장 팬룸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지역난방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주변레벨차에 따라 조경석, 산석 및 투시형난간 등으로 시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2108동 1층 경로당, 어린이집 측면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고, 2101동, 2104동 사이 지하주차장 지하1층내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부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타격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2101동 인근 커뮤니티시설 내에는 계단 및 장애인겸용 승강기가 1개소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2101동 인근 커뮤니티시설 계단실 및 티하우스가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집, 경로당,MDF실 : 2108동 지상 1층(필로티)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1 : 2102, 2103동 사이 인근 설치 / 어린이놀이터-2 : 2106동, 2107동, 2108동 인근 설치
- 주민운동시설-1 : 2104~5동 인근 설치 / 주민운동시설-2 : 2105~6동 인근 설치 / 유아놀이터 : 2107~8동 인근 설치에 설치(어린이집 주변)
- 주민공동시설 : 2101동, 2103동, 2104동 지하주차장 하부 지하 1층에 설치
- 근린생활시설 : 2101동, 2108동 전측면측 지상에 1개층 규모로 설치
- 2108동 2~5호라인의 경우 단지 주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102동 2~4호라인, 2101동 2~4호라인, 2108동 2~5호라인 경우 단지 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구간에는 투시형 난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일조 확보 여부를 감안하여 층별, 동별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였음.
- 2105동 1~4호라인에 옥탑층 고가수조(2개소)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에 의한 소음 발생 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장 공용구역, 집수정 전용 전기분전반은 지하주차장(B1,B2)에 설치
- 2102동 2~4호라인, 2101동 2~4호라인, 2108동 2~5호라인 저층부는 주차램프와 근접하여 차량 진,출입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동 측뢰피뢰침이 23,25,26,29층 설치되어 있음. (동별 층수는 상이함) 더불어, 각동 피뢰침은 옥상에 설치됨.
- 단지 내 2104동~2105동, 2105동~2106동 후면 주변에 주민운동시설 설치예정으로 상기동의 시야, 청각에 간섭되는 조명 및 소음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미술장식품 2105~2106동 주변 중앙광장 녹지, 2108동 측면 주램프 후면 녹지에 설치 예정
- 단지 내 특화를 위한 수고가 높은 식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조망이 저해 될 수 도 있음.
- 단지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통로는 2103동 전면 주변, 2108동 측면 주변 2개소이며, 2103동 전면 주변으로 연결된 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완충녹지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고, 2108동 보행자통로는 외부 인근단지와 연결되어 있음.
- 지하2층 주차장 내(씬큰 계단실 주변) 커뮤니티시설 화장실 오배수패키지펌프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2층 주차장 일부 구간에 주차장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며 미관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에는 수목 식재 되지 않습니다.
- 공용홀 유효면적은 이질재료 간 마감공정으로 인해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p> <table border="1"> <tr><td>건축물명</td><td>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td></tr> <tr><td>건축주</td><td>티에스리빙</td></tr> <tr><td>증공(예정)일</td><td>2026년 11월 30일</td></tr> <tr><td>주 소</td><td>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1</td></tr> <tr><td>층 수</td><td>지하 2층, 지상 29층 / 995세대</td></tr> <tr><td>면적</td><td>157,412.386m² (평균면적 157.010.9791m²)</td></tr> <tr><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td>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td></tr> <tr><td>설계자</td><td>한동건설건축사사무소</td></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p>2023년 12월 8일</p> <p>kpc <small>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small></p> <p>※ 예비인증서는 본문 건축물을 전공 취해 분양 등을 위하여 하며, 실제 분양에 따라 다른 면을 걸러 수 있습니다.</p>	건축물명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	건축주	티에스리빙	증공(예정)일	2026년 11월 30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1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 / 995세대	면적	157,412.386m² (평균면적 157.010.9791m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한동건설건축사사무소	<p>kpc <small>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small></p> <p>수신자 티에스리빙 주식회사 (경유) 허에코너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결과 통보_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p> <p>[인증 등급]</p> <table border="1"> <tr><td>인증등급</td><td>우수등급(공동주택)</td></tr> <tr><td>인증기준</td><td>녹색건축 인증기준</td></tr> <tr><td>국토보통부고시 제2023-129호</td><td>환경부고시 제2023-172호</td></tr> </table> <p>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귀 사에서 신청한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p> <p>3. 알인이 없는 인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하단 QR코드를 통하여 인증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아래 -</p> <p>구분 건축물명 지역 인증등급 인증일자 인증기한 비고</p> <table border="1"> <tr><td>예비인증</td><td>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td><td>인천</td><td>1+ 등급</td><td>2023. 11. 29.</td><td>사용승인 또는 사용증사 유통일</td><td>-</td></tr> </table> <p>붙임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 1부. 끝.</p> <p>한국 생산성 본부 인증원장 </p> <p>인증일 11/29 발행처 서우석 본부장 이동건 본부장 남혁우</p> <p>합격자 시행 에너지효율센터-4005 (2023.11.29.) 전수 http://www.kpqa.or.kr 전화 02-6973-9068 전송 / waseo@kpqa.or.kr / 콤보</p>	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보통부고시 제2023-1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예비인증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	인천	1+ 등급	2023. 11. 29.	사용승인 또는 사용증사 유통일	-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 2. 신 청 자: 티에스리빙 3. 대 치 위 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1 4. 성 능 등 급</p> <p>가. 소음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td>1. 경관환경을 차단하는 능력</td><td>★</td></tr> <tr><td>2. 출입문을 차단하는 능력</td><td>★</td></tr> <tr><td>3. 대차간 경관벽의 차단능력</td><td>★★★</td></tr> <tr><td>4. 고가교수도(도로, 철도) 대학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환경질 수준</td><td>★★★★</td></tr> </tbody>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기변형</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금융부분</td><td>★★★★</td></tr> </tbody>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td>1. 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학교육 공간</td><td>★★★★</td></tr> <tr><td>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의 질 향상</td><td>★★</td></tr> <tr><td>5. 건강환경의 향상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품질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td><td>★★★★★</td></tr> <tr><td>8. 녹색건축증명 관리 청탁제공</td><td>★★★</td></tr> <tr><td>9. 단내·외 사거리 및 차로 배려</td><td>*</td></tr> <tr><td>10. 공동경관 및 환경시설 확보</td><td>★★★★</td></tr> <tr><td>11. 커뮤니티 페어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단내·외 일자리를 확보</td><td>*</td></tr> <tr><td>13. 휴대폰 및 충전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체계</td><td>★★★★</td></tr> <tr><td>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td><td>성능등급</td></tr> <tr><td>1. 길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재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등</td><td>★★</td></tr> <tr><td>4. 수동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호화</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body>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2월 08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관환경을 차단하는 능력	★	2. 출입문을 차단하는 능력	★	3. 대차간 경관벽의 차단능력	★★★	4. 고가교수도(도로, 철도) 대학 실내·외 소음도	★	5. 환경질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변형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금융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학교육 공간	★★★★	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의 질 향상	★★	5. 건강환경의 향상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품질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8. 녹색건축증명 관리 청탁제공	★★★	9. 단내·외 사거리 및 차로 배려	*	10. 공동경관 및 환경시설 확보	★★★★	11. 커뮤니티 페어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단내·외 일자리를 확보	*	13. 휴대폰 및 충전시스템	★★★	14. 방범안전 체계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길지 및 경보설비	*	2. 재연설비	★★	3. 내화성등	★★	4. 수동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호화	★★★★	6. 피난설비	★★★★★
건축물명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																																																																																																
건축주	티에스리빙																																																																																																
증공(예정)일	2026년 11월 30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1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 / 995세대																																																																																																
면적	157,412.386m² (평균면적 157.010.9791m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한동건설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보통부고시 제2023-1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예비인증	인천 경단신도시 AB13블럭 호반써밋 공동주택	인천	1+ 등급	2023. 11. 29.	사용승인 또는 사용증사 유통일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관환경을 차단하는 능력	★																																																																																																
2. 출입문을 차단하는 능력	★																																																																																																
3. 대차간 경관벽의 차단능력	★★★																																																																																																
4. 고가교수도(도로, 철도) 대학 실내·외 소음도	★																																																																																																
5. 환경질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변형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금융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학교육 공간	★★★★																																																																																																
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의 질 향상	★★																																																																																																
5. 건강환경의 향상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품질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8. 녹색건축증명 관리 청탁제공	★★★																																																																																																
9. 단내·외 사거리 및 차로 배려	*																																																																																																
10. 공동경관 및 환경시설 확보	★★★★																																																																																																
11. 커뮤니티 페어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단내·외 일자리를 확보	*																																																																																																
13. 휴대폰 및 충전시스템	★★★																																																																																																
14. 방범안전 체계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길지 및 경보설비	*																																																																																																
2. 재연설비	★★																																																																																																
3. 내화성등	★★																																																																																																
4. 수동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호화	★★★★																																																																																																
6. 피난설비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증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미적용	고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VAT포함)

구 分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인곡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금라기술단
감리금액(VAT포함)	3,574,563,300	848,782,000	881,235,898	264,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VAT 포함)

구 分	금 액	구 分	금 액	구 分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22,862,856,400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60,574,548,000
	기간이자	18,458,270,907		용접공사	-
	필요적경비	6,407,517,065		조적공사	2,328,017,000
	그 밖의 비용	17,766,795,391		미장공사	4,287,240,000
	계	165,495,439,763		단열공사	1,290,782,000
공사비	토공사	3,273,054,000	기계설비	방수·방습공사	1,797,875,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3,895,395,000
	비탈면보호공사	391,844,000		가구공사	7,906,039,000
토목			공사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590,428,000
				난방설비공사	4,195,041,000
				가스설비공사	875,888,000
				자동제어설비공사	345,745,000
그밖의공종			그밖의공종	특수설비공사	276,596,000
				공조설비공사	-
				전기설비공사	18,946,834,000
				정보통신공사	10,695,050,000

	옹벽공사	829,788,000		금속공사	4,125,892,000	간접비	소방설비공사	14,175,551,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승강기공사	3,849,296,000	
	우수·오수공사	829,788,000		창호공사	4,540,786,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0,234,056,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913,123,000		이윤	14,843,991,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07,447,000		타일공사	3,803,197,000		계	228,330,090,000	
	도로포장공사	1,290,782,000		돌공사	4,517,736,000		설계비	3,333,631,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92,199,000		도장공사	2,351,067,000		감리비	5,568,581,198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797,875,000		일반분양시설경비	13,163,590,000	
	조경공사	5,808,518,000		수장공사	4,609,935,000		분담금 및 부담비	-	
	부대시설공사	69,149,000		주방용구공사	1,820,924,000		보상비	-	
	건축	6,315,611,000		그 밖의 건축공사	6,269,512,000		기타사업비성 경비	48,640,002,368	
	가시설물공사	1,244,683,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936,173,000		계	70,705,804,566	
	지정 및 기초공사	3,618,799,000		급탕설비공사	1,936,173,000		그 밖의 비용	53,972,765,671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627,663,000		합계	518,504,1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택지비 가산항목	항목	금액	건축비 가산항목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계	42,632,583,363		건축비 가산비 계	53,972,765,671
	법정 택지이자	18,458,270,907		법정초과 복리시설	2,784,395,818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4,914,514,256 491,451,425	홈 네트워크	9,988,436,070
	재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516,023,996 103,204,799 361,216,797	초고속통신 특등급	2,876,310,480
	등기수수료	보수료 인지세	20,757,314 348,478	에어컨 냉매관	6,720,303,510
	말뚝박기 공사비	7,033,033,980	기계환경 설비	5,590,896,21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9,478,990,980	공동주택 성능등급	9,271,558,935	
	지역난방부담금	1,254,770,43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828,950,229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815,084,4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11,029,200	
			사업승인 조건가산비	외관특화 공사비	2,582,825,130
				법정초과조경 설치비	1,489,212,970
				분양보증수수료	586,090,987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65,433,180,000원	제 05612025-101-00036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티에스리빙 주식회사	(주)호반산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4층(우면동, 호반파크 2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11, 402호(오산동)
법인등록번호	200111-0336903	200111-0308994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위치	안내
현장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3-2 일원) 	분양문의: 1670-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QR코드
https://www.gd3-hoban.co.kr/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